

원활한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법 제정 서둘러야

◇ 취재 / 김종준 과장/기자
(jjun@poultry.or.kr)

정부는 증산위주의 고투입 농법에 의존한 결과 화학 비료 과다사용으로 토양의 양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2000년부터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축산분뇨 자원화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자원화 효율이 좋은 계분은 경종 농가로부터 인기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경종농가에 판매되는 발효 계분은 현행 비료관리법상 1일 생산되는 부산물비료가 1일 1.5톤이 상이면 비료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료업에 등록하여 발효계분을 판매하고 싶어도 각종 규제에 걸려 판매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고, 계분판매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 이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알아보았다.

1. 계분처리 고통 매년 증가

경기 동두천시에서 산란계 1만5천수를 사육하고 있는 K 사장은 계분처리가 수월하지 않아 매번 애를 먹고 있다. 스크레퍼 마저 갖추지 못한 구식 A형 계사이기 때문에 20m 떨어진 계분처리장으로 계분을 옮길 때 매월 인력을 동원하여 계분을 처리하고 있다. 150평 규모 계분처리장에서 톱밥과 섞어 몇 개월간 발효과정을 거치게 된다. K사장은 위탁업자에게 매월 10만원을 계분 처리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

파주시에서 산란계 4만 3천수를 사육하는 S사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자동식 계사로 계사 뒷면에 설치한 계분처리장까지 옮기는 비용은 소요되지 않지만 한 달에 계분처리 비용 130만원을 계분처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다. 경영자금을 2억을 사용하고 있어 이자 상환조차 연체되고 있어 계분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마저도 작년부터 계분처리업자가 계분처리를 제때에 하지 않아 여름내 쌓인 계분의 높이가 1m을 넘어섰고, 지난 여름에는 폭우로 계분이 인접한 논으로 흘러가 보상까지 하였다. S사장의 계분처리장은 240평으로 작년 봄철만 하더라도 배출되는 계분을 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20kg 발효 계분 포대보다 큰 일반 마대 자루에 1,700~1,800원에

판매하였다. 그런데 계분처리를 위탁했던 업자가 발효계분을 납품한 비료공장에서 받은 가계수표가 부도가 나면서 계분처리가 중단된 것이다. 비료공장의 부도 원인은 인근 채소농가의 계분 사용량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현재 S사장이 사는 곳 인근의 경종농가

중 하우스 작물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계분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도 기존 사용량의 30%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이다.

현재 S사장은 계분을 직접 경종농가 밭까지 실어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계분처리장 높이도 50cm 높여 보관 계분 양을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소 사육 농가들이 축분을 경종농가에 무료로 실어다 주는 형태이라 계분 판매는 포기한 상태이다. S사장은 주변의 양계농가 호수가 감소하여 계분이 모자라야 하는데 오히려 과잉되고 있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계분 알선업자들은 가을이나 겨울에 여름내 양계농가에 쌓여 있는 계분을 찾아다니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조건으로 몇 백만원씩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2~3일만에 처리해주고, 한차에 1~2만원을 받고 퇴계원 지역 경종농가에 판매하는 추세이다.



▲ 비료업에 등록하지 못한 M농가는 발효계분을 팔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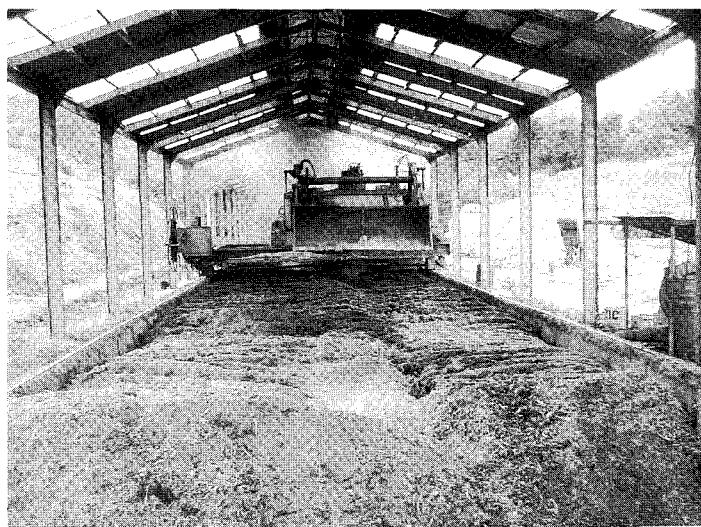
2. 일반판매 계통출하에 판로 막혀

양주시 M농가는 작년에 생산한 6만포 발효계분을 절반도 팔지 못하고 창고에 쌓여 있다. 판매한 일부발효계분은 1,800원/18kg 받던 것을 1,200원 수준으로 낮춰 판매하였다. 농장주에 의하면 일반적인 계분비료 판매가격은 성분 및 발효상태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지만 20kg 기준하여 2,300원, 2,500원, 3,000원으로 M농가는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역 농협에서 계통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마저도 판매가 수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주시 Y지역농협의 경우 자체 부산물 비료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양계농가중 계분품질이 좋은 3개 농가로부터 계분을 받아 퇴비(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농협에서 경종농가에 보급되는 계분비료는 시

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협이 판매하는 퇴비는 농협중앙회와 계약 가격은 2,450원/20kg인데 이중 중앙회 보조금 610원/20kg, 지역농협 지도사업 보조금 570원/20kg이므로 실제 경종농가에 보급되는 가격은 1,270원(운반비 100원, 운반비 330원 포함)이다. 그러므로 양계농가가 생산한 발효계분을 1,600원/20kg에 판매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면사무소에서 부산물비료의 70%까지 보조금을 주는 지역도 있어 양계농가가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이외의 일반 판매할 경우 가격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M농가는 비료업 등록을 추진하고 하고 있다. 하지만 비료성분분석, 계분처리장을 비료관리법에 의하여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비, 개발분담금 등 비료업 등록을 추진하는데 총 3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 사실상 등록을 유보하고 있다.



▲ 지역에 따라 계분처리장을 부산물 비료공장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모순때문에 양계농가가 멍들고 있다.

3. 계분처리장 부산물비료공장 등록이 안된다?

경기도 이천에서 양계업을 하는 H 사장은 2년 전부터 계분처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 농가는 규모가 10만수가 넘기 때문에 상당한 계분이 배출되고 있다. 배출량이 많다 보니 판매에 애로점이 많아 비료업 등록을 하려고 경기도청을 찾아갔지만 부산물 비료업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유는 축사의 부대시설인 계분 처리장은 건축법상 일부 용도를 변경하여 공장용지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공장등록이 안되고 별도 부산물비료 공장을 신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H 사장에 의하면 합법적인 계분처리시설에서 생산된 발효계분을 양계농가가 아닌 비료공장으로 등록한 업체에서만 생산되어야 판매할 수 있고, 축사부속시설인 계분처리장에서 생산된 발효계분은 판매할 수 없다면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풀 것이라는 농림부 정책과 모순되며 이를 개선하지 않는 농림부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였다. 더구나 이천지역의 경우 공장 총량제로 인해 더 이상의 공장 등록조차 규제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작업 공정상 계분처리장에서 계분발효에서 포장 까지 일괄 처리해야지 비용 절감과 품질을 높일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완제품 발효 계분을 부산물 비료공장으로 다시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은 이중 삼중의 비용과 노동력이 소요되어 사회적인 비용만 가중시키고 있고, 일부 악덕처리업자는

발효 계분처리 시설이 없는 양계농가들의 계분을 모아 처리하면서 산업폐기물을 돈 받고 가져다가 축분에 섞어 불량 비료를 생산하는 곳이 있어 부산물 비료의 품질을 낮추고 있다고 한다.

H사장은 계분처리에 애를 먹는 영세 양계농가에 대한 횡포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국자는 어떤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되는지 판단해야 하며, 규정의 모순이 있다면 신속히 법을 개정하여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농민이 없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4. 계분처리를 위한 선결과제

앞서 밝힌바와 같이 모든 양계농가들의 계분처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나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양계농가와 비료업 등록을 마친 농가는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태이다. 계분처리에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1일 1.5톤 이상의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비료업 미등록 농가이다. 2002년말 기준 부산물 비료 등록업체수는 724개로 이중 퇴비(계분, 돈분, 우분)을 톱밥과 기타 첨가제와 혼합하여 만든 비료) 생산업체는 573개, 건계분 생산업체는 64개인데 순수 양계농가 비율은 손에 꼽을 수준이다.

이는 부산물 비료업 등록 제도가 농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등록 자체가 할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된다. 또한 소규모 농가들은 계분처리에 투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

어 계분을 농가의 소득원으로 만들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농가의 항생제 사용으로 계분발효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설이 있지만 이는 방부제를 넣은 톱밥 등에도 문제가 크다는 의견이 있어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1)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양계농가 뿐만 아니라 양돈농가들도 오분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비료관리법, 수도권정비법,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은 폐수배출시설, 축산시설의 오염원 특별관리,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억제, 기존 특정유해물질 배출 시설의 이전유도, 총량규제의 실시, 질소·인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러한 규제가 비료업으로 등록하지 못하거나 불가능한 양계농가와 양돈농가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법 규제는 환경부, 기금 지원은 농림부로 이원화된 관리를 축산농가들이 친환경 축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으로 규제 차원보다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촉진방향으로 유도하고, 가축분뇨에 대한 자금지원체계 정비 및 자원화되는 농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양계농가)가 유기적인 결합이 가능하도록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이 절실하다. 가축분뇨관리법에서 양계농가의 계분처리장 등록을 수월하게 하는 대신 유통되는 부산물 비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활성탄 원료로 사용

현재 법률적인 모순된 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퇴비에 사용되는 계분은 절대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종농업의 작물 수급 변화에 따라 계분처리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정적으로 계분처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이 계분을 활성탄 원료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미국, 일본에서는 활성탄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축산기술연구소 축산환경과 최희철 박사가 실용화 연구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최희철 박사에 의하면 국내에서 계분의 퇴비화는 정착단계에 있지만 사료화는 동물복지, 사료 효율성 문제 등으로 보편화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전하면서 외국에서 실용화가 되고 있는 활성탄 제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활성탄은 악취제거용 필터, 정수필터, 폐수처리 마지막단계 정화제 등 용도가 다양하므로 계분을 이용하면 야자껍데기, 석탄으로 만든 고품질 활성탄은 아니더라도 중질 활성탄을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최희철 박



▲ 계분을 이용한 활성탄 제조로 계분의 자원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최희철 박사

사의 의견이다. 활성탄을 제작 가능한 업체는 계분 공동처리장, 대규모 농가 적용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활성탄 생산단계는 단순하지는 않지만 건계분 또는 발효계분을 사용하여 펠렛을 만들고 이후 공정단계를 거쳐 활성탄을 생산하게 된다. 시중 유통되는 고품질 활성탄 가격은 1,500원/kg이지만 계분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면 1/3 수준까지 가격이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5. 자원 재활용 친환경 축산업 정책 필요

경종농업의 농가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자유무역확대, 농가부채 증가로 농업포기, 개발로 인한 농지감소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계분 수요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작년부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가장 피해를 입는 곳이 소규모 양계농가와 비료업에 등록하지 못한 농가들이다.

이런 양계농가에서 배출되는 계분이 제대로 판매되지 못하거나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주장하는 친환경 정책은 허울에 불과하다. 무분별한 계분처리 규제로 양계업 생산기반을 흔들기보다는 경종농업과 양계업의 유기적인 관계를 더욱 강구하는 진정한 친환경 농업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축산분뇨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고, 이 법이 제정하기 전까지는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될지 모르므로 그 동안 계분을 처리하지 못하는 농가를 위하여 지역별로 농협이 운영하는 축산퇴비유통센타가 나서서 처리해주거나 경종농가와 연결해 주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양계]**